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하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의2).
-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함(안 제28조제9항).
-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52조).
-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치유휴직 신청시 허용 기간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변경하고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78조의2).

II. 검토 의견

1. 피해자 인정 신청 등 및 치유휴직 신청 기산점 명확화 등(안 52조 등)

- 안 제52조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의 피해자 인정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을 현행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¹⁾ 연장하려는 것이고, 안 제60조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²⁾을 개정안의 시행 후부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안 제52조와 제60조 모두 기간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정신청, 지원금 지급신청 및 치유휴직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일인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³⁾ 피해자 인정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 기간은 현행법에 따른 기산점인 법률 제20427호로 제정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일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됨을 명확히 하고, 이미 현행법에 따른 신청 기간이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은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을 유사입법례⁴⁾처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현행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1차 활동 종료일은 2026년 6월 16일(조사개시일인 2025년 6월 17일로부터 1년)이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연장 가능함에 따라 최종 활동 종료일은 2026년 9월 15일임.

2) 제정안의 시행일인 2024년 5월 21일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5월 20일까지였음.

3) 기존의 현행법 시행 후 2년 이내는 2026년 5월 20일까지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인 공포 후 3개월은 2026년 5월 20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60조제2항 단서 규정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후부터 새롭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치유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해당 단서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임.

- 따라서, 부칙에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 받은
사람에게도 안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례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52조, 제60조 및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u>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u>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u>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u>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	② ----- ----- -----이 <u>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u>

-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회)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회”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회)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회”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 설>	<u>원회 활동 종료</u>----- ----- ----- ----- ----- 제60조(근로자의 치유회) ① ----- ----- -----<u>이 법 시</u> <u>행일(법률 제00000호</u> <u>10·29이태원참사 피해</u> <u>자 권리보장과 진상규</u> <u>명 및 재발방지를 위</u> <u>한 특별법 일부개정법</u> <u>률의 시행일을 말한</u> <u>다)부터 제9조제1항에</u> <u>따른 조사위원회 활동</u> <u>종료</u>----- -----. 부칙 제2조(근로자의 치유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60조제1항에 따라 치유회를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박 병 섭)